

독립이사평가위원회 규정



주식회사 풀무원

제 1 장 총 칙

제 1 조 (목적)

- ① 이 규정은 정관 제37조의2, 이사회규정 제12조에 의거, 이사회 내 위원회인 독립이사평가위원회(이하 "위원회")의 구성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② 회사는 독립이사의 이사회 내 활동 및 이사회 운영 평가의 절차와 기준 수립, 결과 활용 및 개선 사항에 대한 협의와 검토를 위해 위원회를 설치한다.

제 2 조 (역할 및 권한)

- ① 위원회는 이사회가 위임한 권한과 역할에 따라, 독립이사의 이사회 내 활동에 대한 평가와 이사회 운영 평가의 절차 및 기준을 수립한다.
- ② 위원회는 평가 결과를 연임, 보상, 역량 개발 등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논의·수립한다.
- ③ 위원회는 평가 결과에 따른 개선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, 향후 이사회의 운영 및 독립이사의 역할 제고를 위한 개선 방향을 수립한다.

제 2 장 구 성

제 3 조 (구성)

- ① 위원회의 위원(이하 "위원")은 이사회에서 선임한다.
- ② 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며, 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독립이사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별도로 이사회에서 정할 수 있다.
- ③ 위원의 임기는 이사 임기 만료일까지로 한다. 다만, 현저한 사정의 변경이 있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위원의 임기를 조정할 수 있다.

제 4 조 (위원장)

- ① 위원회의 위원장(이하 "위원장")은 위원회의 결의로 독립이사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.

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별로 업무를 분장하게 할 수 있다.

③ 위원장 유고 시 각 호의 순서로 직무를 대행한다. .

1. 독립이사 중 가장 먼저 위원회에 선임된 이사
2. 제1호에 해당하는 이사가 복수일 경우 연장자

제 3 장 회 의

제 5 조 (종류)

① 위원회는 정기위원회와 임시위원회로 한다.

② 정기위원회는 연간 1회 개최한다. 다만, 경우에 따라 위원회에서 그 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.

③ 임시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개최한다.

제 6 조 (소집 및 소집절차)

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. 그러나 위원장 유고시에는 제4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.

② 각 위원은 위원장에게 의안과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. 다만, 위원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소집을 청구한 위원이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.

③ 위원회를 소집할 때에는 회일을 정하고 그 7일전에 각 위원에게 통지한다. 그러나, 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.

제 7 조 (결의방법)

① 위원회의 결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.

② 위원회는 위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위원이 음성을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당해 위원은 위원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.

- ③ 위원회의 결의에 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.
-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위원의 수는 출석한 위원의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.

제 8 조 (부의사항)

① 위원회는 독립이사의 이사회 내 활동 및 이사회 운영의 평가와 개선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의한다.

- 1. 독립이사의 이사회 내 활동 평가, 이사회 운영 평가의 절차 및 기준의 수립
- 2. 독립이사의 이사회 내 활동 평가, 이사회 운영 평가 결과의 활용 방안
- 3. 기타 이사회에서 위임한 사항

② 위원회에 보고할 사항은 다음 각 호로 한다.

- 1. 직전연도 평가의 개선 이행상황
- 2. 해당연도 평가의 결과 및 개선 방향
- 3. 평가 결과의 외부 공개 현황 및 계획

③ 위원회는 위원회에서 결의된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제 9 조 (관계인의 의견 청취)

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임직원 또는 외부인사를 출석시켜 의안에 대한 설명이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.

제 10 조 (의사록)

① 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한다.

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, 경과요령, 그 결과,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위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받아 보관한다.

제 4 장 기 타

제 11 조 (위원회 지원조직)

- ① 위원회를 지원하기 위해 간사를 둔다.
- ② 간사는 이사회사무국장이 되며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한다.

제 12 조 (규정의 개폐)

이 규정의 개폐는 이사회회의 결의에 의한다.

부 칙(1)

이 규정은 2006년 3월 10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)

이 규정은 2025년 06월 27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3)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26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독립이사에 관한 경과조치) 제1조, 제2조, 제3조, 제4조 및 제8조의 개정규정은 2026년 7월 23일부터 시행한다.